

2023.9.6 14:00 국가인권위원회·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12차 노인인권포럼

노인의 외롭지 않을 권리와 가족 구성의 자율과 선택: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입법

고령사회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 관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쟁점 고찰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발제 자료는 송효진(2021).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제13권 제3호, 2021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98-313면을 토대로 함)를 기반으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목 차

- > I. 들어가며
- > II.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쟁점
- > III.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 제도화 방향
- > IV. 나가며

I. 들어가며

혼인율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 가치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 가족은 변화의 역동 속에 있음.

통계청(2022)의 '장래가구추계'에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1인가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비친족가구의 비율도 2020년 2.0%에서 2050년 3.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송효진외, 2022: 14)

새로운 파트너십의 형성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조사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을 보면, 동의도(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가 2008년 42.3%에서 2020년 59.7%로 높아지는 추세임(송효진 외, 202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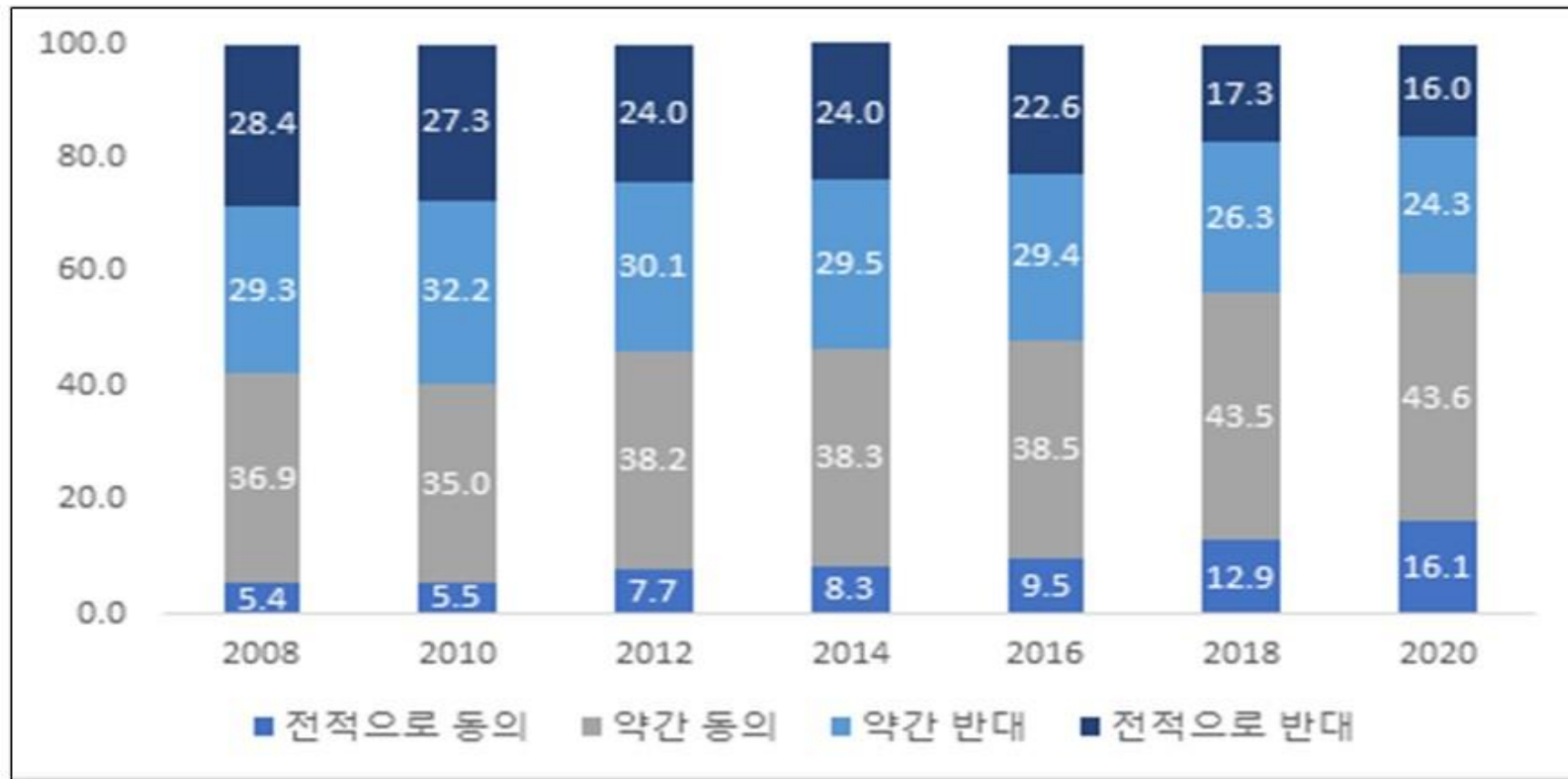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20-2050)

(단위: %)

구분		2020	2025	2030	2040	20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31.2	34.3	35.6	37.9	39.6
친족가 구	계	66.8	63.3	61.8	59.2	57.3
	부부	16.8	18.3	20.0	22.2	23.3
	부부+자녀	29.3	26.0	23.6	19.7	17.1
	부+자녀	2.5	2.3	2.2	2.1	2.0
	모+자녀	7.3	7.0	6.9	6.6	6.6
	3세대이상	3.8	2.9	2.4	1.8	1.4
	기타*	7.1	6.8	6.7	6.7	6.8
비친족가구		2.0	2.4	2.6	2.9	3.1

*주: 기타는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2022.6.28).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 보도자료, p.4.



주: 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3(검색일 : 2022.6.3.).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2008-2020)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혼 이외의 비혼 동거 등을 넘어 기존의 가족 개념(혈연·법률혼·입양 중심의 가족)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활돌봄공동체 등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사회적 연대라는 관계의 확장성이 이미 실천되고 있음.

ex) 동거가족, 돌봄공동체(대안적 노인 공동체), 주거공동체 등

생활 ·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법률혼'의 범위 밖에서 생계와 돌봄을 공유하는 관계는 그 스펙트럼과 결이 다양하고 확장적.

이러한 생활 ·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는 가족변화와 고령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돌봄과 친밀함을 함께하는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가족이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가족“-김희경(2023:291) 「에이징 솔로」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가족 변화 속에서 제도 안팎에서 제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시도되는 새로운 가족 구성 및 변동이 특히 고령화와 교차되어 나타나게 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법제도상의 지원, 이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이에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토대로 한 현행 가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 등 관련 법안의 발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647, 발의일 2023.4.26)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404, 발의일 2023.5.31)

외국에서의 입법 과정 및 사회적 논의와 국내 논의의 시작이 혼인 중심의 파트너 관계의 확장성-법률혼 대상의 확장성 및 비법률혼 파트너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입법이 여전히 미완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양한 공동체 관계까지 확장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입법상의 쟁점 논의에 있어 어려움도 존재하고, 모색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존재함.

(현재 국회 발의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하 법안은 2인 간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공동체 관계까지 대상에 담지는 않고 있음)

본 발제에서는 확장적이고 다양한 대안적 관계들까지도 가능한 한 법안에 포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맞닥뜨린 입법론적 고민을 쟁점으로 정리한 바를 공유하고자 함.

II.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쟁점

1. 문제의 제기

- 현재 논의되는 관계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파트너십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 공동체 논의가 혼재되어 있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 쟁점을 정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인이 넘는 다수 당사자 관계의 제도화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이슈. 2인의 파트너관계와 다수 당사자 관계의 제도화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담론에서의 추상적 포용 논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제도화에 있어서의 쟁점 검토가 필요함.
- 파트너십 관계와는 다른 다양한 공동체 관계의 논의에 있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체 관련 쟁점 검토도 필요함. (ex 위탁가정, 그룹홈). 이들 공동체는 기존의 횡적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던 파트너십, 공동체 관계 논의에서 더 나아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는 성인 간의 계약관계에 기반한 관계형성 논의와는 다른 특면이 있기 때문에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2. 제도화에 있어 관계의 다양성 포용과 쟁점

가. 제도화로 포섭되는 관계 결합성에 대한 검토

법률혼 이외의 파트너 관계도 결이 다양함.

법률혼 이외의 대안적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가벼운 동거를 포함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제도로 설계하여야 함.

등록과 증명을 수반하는 제도의 경우 당사자가 등록함으로써 제도에의 편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요건이 지나치게 높거나 엄격하게 되면 진입의 장벽이 생기게 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고려되어야 함.

나. 다양한 공동체 관계 제도화 관련 쟁점 검토

(1) 섹슈얼리티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가족 관련 법제의 접근

가족다양성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주요 이슈는 가족을 수평적 관계의 측면에서 재생산 중심의 개념을 넘어 섹슈얼리티에 기반하지 않은 생활·돌봄을 함께하는 관계에까지 확장하여 정책과 제도에 포섭하고자 하는 논의임.

해외의 관련 주요 입법사례로 들어지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규정,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법은 그 대상을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관계에 한한다는 요건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당초 동성 커플의 권리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제도화한 법제의 취지상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파트너 관계로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이성 커플도 이용하는 제도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음.

섹슈얼리티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생활·돌봄을 함께하는 관계를 제도에서 포섭하고 있는 사례로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성인 상호의존 관계법(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과 호주의 빅토리아 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입법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화·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외국의 입법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한 참조 사례임.

다만, 이러한 돌봄을 함께하는 관계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관계의 속성상 혼인이나 비혼 커플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법 또는 동일한 규율 사항 아래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음.

관련 제도나 정책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관계인지를 굳이 구분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돌봄과 부양, 생활을 함께 한다는 점에 있어 공통된 규율, 정책 지원 요소가 존재하지만, 관계 속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괄적 제도화가 적절하지 않은 지점도 존재함.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들어오게 되는 법정의 권리의무 관계 규정들은 대체로 법률혼에 준하거나 느슨한 정도로 접근될 수밖에 없는데, 커플이 아닌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접근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커플이 아닌 생활·돌봄공동체의 경우 그 구성원은 형제나 자매, 사촌 등 친족일 수도 있음.

예컨대 사별이나 비혼으로 싱글인 고령의 사촌 지간 여성들이 서로 함께 돌보며 노년의 공동 생활하는 경우 등 다양한 관계 구성이 예로 들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들 공동체 관계와 커플을 동일선상의 제도화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음.

비혼 파트너 관계의 제도화에서 효력 요건을 정함에 있어 일정 범위 이내의 근친 관계 결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제한을 둘 것인지 검토될 수 있을 것인데, 커플이 아닌 공동체 관계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효력 요건을 두는 검토는 어려워짐.

또한 커플 관계와 돌봄공동체를 함께 하나의 법제에서 일괄하여 규율을 시도한다면, 3인 이상의 공동체는 적어도 이 제도에서 함께 포용하기는 매우 어려워짐.

커플 관계보다는 각자의 생활이나 삶이 더 구분되고 독립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이 커플보다는 매우 적을 것이므로, 재산 관계나 대내적 권리의무 관계 역시 결합의 강도가 이질적인 속성의 대상을 함께 규율하려 한다면, 규정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접근은 일응 장점도 있으나, 대내적 관계에서 커플이라는 속성상 보호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규정의 흠결은 커플의 일방 당사자의 보호에 취약할 수도 있음.

(2) 다수 당사자 공동체 관계 포용 제도화 쟁점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공동체 관계 그 자체로만 보면(더욱이 섹슈얼리티와 무관한 공동체라면) 당사자의 수가 관계의 성격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는 아님.

❖ 예) 노년에 서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는 세 할머니

출처: KBS(2021. 9. 10.),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다큐온 90회 (방송일 2021.9.10, 22:50), <https://www.youtube.com/watch?v=WkPFJUL1Wto> (검색일: 2021. 12. 16.).(송효진, 2021:67에서 제인용)

->사실 이들의 관계에 할머니가 세분이면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두 분이서 사시게 되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2인 커플 간의 관계를 전제로 규정한 법을 토대로, 그 이상 사람의 집단(일종의 비법인 사단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까지 대상성만 확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가지는 2인관계와, 단체적 속성의 공동체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음. 단체는 2인이든 3인 이상이든 구성원의 변동(탈퇴 등)이 있어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독립성이 관계의 결합성보다 강조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생활과 주거가 같을 수도 그저 동일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생활만 공유할 수도 있어 매우 유연하고 유동적일 수 있음.

최근 발의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647; 의안번호 22404)은 모두 2인 생활 동반자관계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함.

앞서 언급한 캐나다 앨버타 주의 「성인 상호의존 관계법(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과 호 주 빅토리아 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 역시 2인 당사자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후에 살펴볼 지자체 조례의 경우 "사회적 가족"-공동체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의되는 공동체 관계는 그 다양성과 확장성이 매우 크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임.

개인화 시대에서 대안적 친밀성과 사회적 연대의 공동체를 커플 중심, 2인 관계만으로 제도적 포용에 한계를 두는 것은 다양화된 삶의 선택지를 존중하자는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함. 이미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실천되고 있는 현상을 앞으로의 제도적 대응과 준비에 있어 배제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살펴본 지자체 조례들에서의 사회적 가족 개념은 기존의 2인 당사자 커플 중심의 관계 보호 논의를 벗어나 확장적인 모색을 가능하게 해 줌. 다만 이들 공동체의 경우 다양한 지향과 결이 존재하여 일괄적인 내용으로 규율하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다양한 결의 공동체 관계는 반드시 가족을 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고, 주거와 생활을 함께하는 것 보다는 보다 확장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함.

이들 공동체 관례의 권리의무 관계 등 사적 규율 관계는 특히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규정은 최소화하는 태도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함.

이들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접근보다는, 이들의 정책, 제도 욕구에 대한 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향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 지원 및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실천하는 당사자들의 정책·제도에 대한 욕구를 더 세심히 파악하고 이에 조응하여 정책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야 할 것임.

**현행 지자체 조례들의 사회적 가족 역시 지원 근거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3)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체 관계 쟁점

최근의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계의 제도적 포용 논의에 있어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그룹홈 등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공동체 관계에 대한 논의임.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체 관계 역시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움.

다만 제도화 이슈에 있어서, 기존의 파트너 관계라든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의사의 합치)에 의한 공동체 관계의 성립으로 접근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유효한 약정 체결이 가능한지의 쟁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음. 공동체 관계를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권리의무가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로 설정함에 있어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는 공동체 논의는 이 점에서 쉽지 않음. 가족구성권의 논의는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당사자 간 약정에 기반한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과 과제에 직면. 공동체 관계는 약정에 의하든, 법률의 규정을 두든 상호 권리 뿐 아니라 의무의 부담도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만약 제도에서 관계의 성립과 효력을 규정하려 한다면, 법률행위 능력은 당사자 요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임.

Ⅲ.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제도화 방향

1. 유연하고 포용적인 가족법제로의 일반법(민법) 및 기본법 정비

가. 민법상 가족 범위 규정 정비

나.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비 방향

2. 파트너십 관계와 다양한 공동체 관계 제도화

가. 법률혼 이외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나. 생활·돌봄을 함께 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다. 제도 밖 관계 보호를 위한 개별 법제 차원에서의 과제

1. 유연하고 포용적인 가족법제로의 일반법(민법) 및 기본법 정비

가. 민법 상 가족 범위 규정

- '민법에서 규정한 가족'에 들어가야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생활로서 국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은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 가족 변화의 현상에 대해 배제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 관련 법제의 일반법으로서 민법은 가족다양성에 대응하여 현행의 협소한 가족 범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민법」 제779 '가족의 범위'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나.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비 방향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경직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서 가족다양성을 포용하고 유연한 가족 지원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혈연·법률혼 중심의 가족 정의 규정이 아닌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며 가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나아가, 가족다양성을 보장하는 특별법과 이에 연동되는 가족 정책의 기본법을 통한 정책 및 지원 그리고, 타 부처 정책(예컨대, 주거, 복지 등)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2. 파트너십 관계와 다양한 공동체 관계 제도화

가. 법률혼 이외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체계상으로는 민법 혼인편 내에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예, 프랑스 PACS), 별도의 법률로서 넓은 의미의 혼인 법제에서 법률혼이 아닌 파트너 관계를 제도화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입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예, 독일 생활동반자법, 최근 국회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참조).

➤ 국회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관계의 성립과 해소, 효력 권리의무 관계, 등록 및 증명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성인 2인으로서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법률 의해 등록된 당사자가 그 적용 대상이 됨(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 .

이성·동성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비혼 동거 관계에서 이성·동성이든 제도에서 배제될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법률관계 검토에 있어 구분할 실익도 없음.

당사자 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기초한 관계로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현재 부부재산약정 제도의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관계와 삶의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후속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

- ❖ 약정의 등기는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할 것이며, 공증 등 더 열린 방식도 존중해준다든지, 생활동반자관계 신고 시 생활동반자 약정 서식(주요 사항을 체크하여 기입하는 방식)을 제공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언될 수 있음. 또한 재산 관계는 관계 해소 시의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해소 전 분할 등 보다 자유로운 약정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약정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률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준비가 필요함.

나. 생활·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에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거나, 돌봄,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 뿐 아니라 가족 기능의 부족을 메우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개인이 자발적으로 생활돌봄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지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질 뿐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폭증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한 감소효과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돌봄공동체는 2인인 경우도 그 이상의 다수 당사자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또 지역사회에서 인근에 거주하여 느슨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사실상 가족일 수도 있고, 굳이 전통적인 가족과 유사한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받거나 강한 결속으로 묶인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호주 빅토리아 주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의 규정례와 같이 “상대방과 혼인을 하지도 않았고 커플 관계도 아닌, 가족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돌봄 관계 포괄 가능성 고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실천하는 당사자들의 정책·제도에 대한 욕구를 더 세심히 파악하여 이에 조응하여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

- 필요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양한 결의 사회적 연대를 제도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신분법 체계의 확장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사회적 정책지원 근거로서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연대로서의 생활돌봄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돌봄지원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정책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지원 및 연계 모색.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정책 대상으로 포함. 정책적 지원. 법률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돌봄공동체에 대한 일상의 지원으로 정책 확산 가능.

- 관계 증명/등록 이슈

생활·돌봄공동체의 관계의 결이 다양하므로, 일상의 상호 돌봄에 수반되는 사무를 위해 필요한 관계 증명이나, 지정/대리 등 유연한 제도 활용방안, 정책 서비스에 연계되는 상황(주거 신청, 가족 서비스 등)에서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정책지원 신청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등록·증명, 일상의 대리 등 방안 모색.

➤ 입법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제3호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3호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다. 제도 밖 관계 보호를 위한 개별 법제 차원에서의 과제

제도에의 편입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임.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여도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제도의 밖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임.

제도 밖에서의 관계 형성이 이들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이나 불편이 강요될 수는 없음.

의료, 장례, 돌봄, 주거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차별은 개별 법령과 정책에서 해소되어야 함.

대안적 관계들에 대한 제도화 추진과 함께 개별의 법령에서 가족 변화를 반영한 개선과 정비는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임.

IV. 나가며

우리 사회 가족 변화의 역동은 마치 근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은 맥락에서의 과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 이상에서는 가족다양성의 논의를 제도화의 방향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입법론으로 도출해갈지의 고민과 과제를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음.

고령사회에서 특히 돌봄과 부양은 매우 주요한 이슈임. 가족 다양성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사적 부양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적 부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 부양이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기꺼이 당사자가 선택하여 상호 돌봄과 부양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여도, 제도적 승인과 지원을 법률혼에만 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의 돌봄/부양 상황을 제도에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공적 부양 비용 부담과 부양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임.(송효진외, 2022:99-100 참조).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 관계를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것은 가족변화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과제라 할 것임.

참고문헌

김희경(2023), 에이징 솔로, 동아시아.

송효진(2021).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제13권 제3호, 2021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송효진 외(2022),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방향 및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감사합니다
